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9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 지급 근거 마련

라. 소속장관의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규정 폐지(안 제1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6호에 따른 직

위해제처분기간 포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제16조제3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포함)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

제48조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포함)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 ----- -----.

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
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
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
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
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
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
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
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
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
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
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
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
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
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
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
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
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6호에 따른 직
위해제처분기간 포함)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8. ~ 10. (생략)

제16조(특별승급) ①·② (생략)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
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

8.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승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⑦ (생략)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1. (생략)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6호 -----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생략)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포함)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u>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u>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u>제1항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u>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 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u>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u>	2. ----- ----- <u>제6호</u> --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생략) ② <u>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국 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 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 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 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u>	----- -----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국가공 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 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 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 우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기간 포함) 중에 지급한 연봉과 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교 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	--

	<u>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u>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u>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 우</u>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u>제1항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 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2-2100-6877